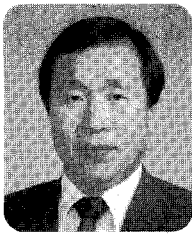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조기 정착



박종수 교수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02

년 5월 14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고, 11월 14일에는 동 법의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농림부장관령)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의무자조금제도가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전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만 마련되었을 뿐, 의무자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 다양한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차는 자조금의 일괄 징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수행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찬반투표이다. 예컨대 양돈자조금의 경우 선출해야 할 대의원의 총수는 200명이며, 이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등을 선출구로 하여 양돈업자 중에서 선출된다. 대의원 선출을 위해 양돈생산자단체는 각 선출구별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의해 대의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대의원을 양돈업자들이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해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무자조금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라도 축산자조금법은 조기에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돈업을 비롯한 각 축산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전제된다.

그간 몇 해 동안 대한양돈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각 축산단체별로 임의자조금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양축가의 소극적인 참여와 무임편승자의 상존 등으로 인해 임의자조금제도의 한계성을 절실히 느껴왔다. 이에 자조금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많은 축산관련 지도자들이 임의자조금제도의 모순을 직시하고 입법을 통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해 왔으며, 그러한 지도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축산자조금법이 입법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따라서 동 법이 정착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여타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축산자조금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축산단체의 지도자들은 의무자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그 회원들은 물론 비회원인 양축가들에게도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구해야 한다.

축산물의 소비전망을 비롯한 축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특히 고도의 개방 및 경쟁경제체제 하에서 양축가는 이제 축산물이 생산된 만큼 팔리는 소위 공급이 수

요를 창출해 왔던 시대 속에서 생산에만 몰두하던 지금까지의 소극적 경영활동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이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역할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유통체계의 개선이나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돼지

대한 추가시장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추가시장 확대를 위해 양축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통관리 수단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촉진 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소비촉진 비용이며, 이 비용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활동을 통

축산자조금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축산단체의 지도자들은 의무자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그 회원들은 물론 비회원인 양축가들에게도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구해야 한다. 또한 양돈업을 비롯한 각 축산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전제된다.

고기를 비롯한 우유와 쇠고기 등 대부분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정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생산을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생산·공급이 매우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양축가는 자기가 생산하는 축산물이 초과 공급될 때에 생산을 단기적으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산된 축산물에

해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수혜하는 양축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즉, 개방경제하의 양돈경영에 있어서 값싸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일이 필요조건이라면, 그렇게 생산된 국내산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일은 양돈경영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또한 자조금사업이 특정 생산자단체들의 편익을 위해 추진되지 않는가 하는 일부 소

수 양축가들의 오해도 절대로 불식되어야 한다. 축산자조금 법에는 자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일, 즉 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 자조금의 조달·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등을 심의·의결할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중 과반수 이상은 양축가인 대의원들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원회의 감사도 대의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자조금은 생산자단체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부담자인 양축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것이다. 다만 자조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과 사무실을 포함한 여타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생산자단체의 사무실에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다. 고도의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축종별 각 생산자단체들이 그들 회원들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시장확대를 위해 소비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필연적 사업이다. 그런데도 혹시 자조금사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특정 생산자단체

의 편익과 연계된다고 생각하는 양축가가 있다면 그것은 큰 오해와 기우이며, 차체에 그러한 기우나 오해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자조금법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는 자조금 수납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일이다. 축산자조금법은 축산단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수납기관”이라함, 양돈업의 경우 도축장의 대표자임)에게 자조금의 거출을 위탁하고, 당해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거출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납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체에 분명히 지적할 것은 원활한 소비촉진 활동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가 촉진된다면, 양축가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수요가 증대되면 국내산 가축의 도축 또는 가공물량 또한 증가되기 마련이며, 그에 따라 얻어지



▲지난 12월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1차 양돈 자조금활동자금준비위원회의

는 부가수익은 양축가는 물론 관련 축산물의 도축업자와 가공업자 등 축산관련 산업의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수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양축가가 부담하는 자조금의 수납업무에 도축업자나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함은 우리나라 축산 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은 양돈농가를 비롯한 우리 축산농가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우리의 축산업이 축산업 관련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 거듭나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명실공히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양돈**